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4
----------	-----------

제안연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보다 발전적인 시행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그 명칭을 현행화하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될 각 호의 사항에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추가함(안 제3조 관련)
- 나.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관련)
-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관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에서 제8호로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제4조의 제명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개정안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 <제정안과 같음> ② ----- -----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 8. (제정안 1~7호와 같음)
제4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 <u>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u>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u>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4조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 ----- -----따른 “ <u>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u> ”----- ----- ② <u>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u> ----- ----- 1. ~7. (생략) <제정안과 같음>

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5.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제6조 (청소년거리 조성)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제7조 (청소년활동의 날)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 ----- ----- -----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 ----- ----- . <u><단서 삭제></u> 1.~ 4. (생략) <제정안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각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5.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거리 조성)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활동의 날)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각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